

산업통상자원부

수신자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
(경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전압 시 재생에너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조치 |
| 당사자 | 성명(명칭)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 |
| | 주 소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망 고장 및 복구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려면, 지속운전성능 개선을 통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가 필요함 ○ 전력시설은 국가기반 인프라이자 국민경제의 핵심 요소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 ○ 재생에너지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지속운전성능 개선이 필요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운전성능 제원조사 사업 참여 2. 지속운전성능 S/W 개선 사업 참여(정부지원사업 검토 중)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사업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 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 2 항 :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 1 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 1 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 52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항 :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또는 운전 시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 | | | | |
|------|--|--|-----|-------------|-------|---|
| 의견제출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 부서명 | 전력계통 혁신과 | 담당자 | 류영규 |
| | 제출처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계통기술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신재생혁신팀 | | | 전화번호 | 한국전력공사 061-345-5433 061-345-5289 한국전력거래소 061-330-8632 061-330-8999 |
| | 전자우편 주소 | 한국전력공사 biz-solar@kepcو.co.kr 한국전력거래소 biz-solar@kpx.or.kr | | | 팩스번호 | 한국전력공사 061-345-5459 한국전력거래소 061-330-8895 |
| 제출기한 | | 2025년 | | 10월 | 15일까지 | |
| 비고 | <p>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정부가 최종 검토할 것임을 안내 드립니다.</p> <p>※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의 전자우편 등 서버는 정상 작동 중임을 안내 드립니다.</p> | | | |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산업통상자원부



기안자 사무관 류영규 류영규 검토 전력계통혁신과장 임태실 임태실 전대결 전력산업정책과장 문양복 문양복
 협조자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위성원 위성원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홍수경 홍수경
 시행 전력계통혁신과-1 접수 (2025.09.30.) 접수
 우 30118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 https://www.motie.go.kr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화번호 팩스번호 / e-메일 / 공개

210mmx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